

2023년 소공인 협업제품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시흥산업진흥원(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에서는 집적지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3년 소공인 협업제품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4월 12일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집적지(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 소재에 10인 미만의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 (업종코드 C26, C28) 소공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지원규모 : 13개사 내외 (업체당 600만원 이내)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지원분야 및 내용 :

구분	지원 내용
제품 개발	- 시제품, 시작품 제작 비용, 설계, 부품 구조변경, 재료변경, 제품 개선 등
디자인 개발	- 디자인 개선 또는 신규 개발 비용 등(포장 패키지, CI/BI, 앱 등)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3년 8월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방문 및 이메일 제출
 - 주소 : (15073)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3층 301호
 - 이메일 : (tkzjwoans414@sida.kr) ☎ 031-434-8737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① 사업신청서	서식1
	② 사업자등록증 or 증명원	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제조업 必)
	③ 소상공인확인서 (http://sminfo.smba.go.kr)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소상공인 명시 * 주업종 : 기타기계장비제조업 必	확인서가 없을 경우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공인 여부 확인 **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후 제출 상시근로자가 없을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④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식2
	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3
	⑥ 사업계획서	서식4
	⑦ 기업정보조사서	서식5
	⑧ (홈택스)업종코드 조회 인쇄	로그인>MY홈택스>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주업종명(업종코드) 조회 후 인감 또는 자필서명날인 -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개재되어 있으나, 조회시 제조업이 아닌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택1) * 최근 1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⑨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서식6
	⑩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국세)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민원24
선택	⑪ 가점 증빙서류	백년소공인 확인서, 수출실적 증빙 서류 등

3. 평가 및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신청서류 접수후 선정 기준표에 의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방법 :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

-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

- 서류평가 :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출 서류에 대해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기업)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함

○ 결과통보

- 선정평가 이후, 개별 통보

※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교육 참여자 및 신청자 가점 부여

4. 사업수행 및 지원금 정산

○ (사업수행) 특화센터로부터 승인 된 협업제품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소공인과 수행업체(제작 개발 등)가 사업 실시

* 수행(공급)업체별 비교견적서 검토를 통해 최저가 업체 선정

- (지원금 정산) 소공인 제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특화센터가 공급가액만 지급(최대 6백만원, 지원금액 한도 이상 비용은 신청인이 수행업체로 지급)
 - (지급대상) 수행업체(공급업체)
 - (서류검토) 비용지급 정산서류 확인 및 보완요청은 특화지원센터에서 실시

<정산서류 기준(안)>

- ▶ 지원금 지급(소공인 → 특화센터)을 요청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 전자세금계산서 : 수행업체(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
 - ☑ 거래명세서(비교 견적서 1부) : 구체적인 위탁 업무내용(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공급업체명 또는 공급업체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 ☑ 완료보고서 :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 ☑ 이체확인증 : 공급가액 및 자부담(부가가치세+정부지원금 초과분)에 대한 은행발급자료로서,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 지원사업에 소요된 비용 중 소공인 자부담 부분(부가세 포함)은 제외하고 **수행업체(공급업체)에 특화센터가 직접 지급함**
- ☑ 1개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대 600만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소공인은 해당 실행비용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 ☑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함

5. 지급제한 등

- 기업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아래사항에 해당된 경우 지원이 취소됨.
 - 제출서류 등 관련 문서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2023년 현재 기업부도 및 휴·폐업인 기업
 - 2023년 유관기관 지원사업 기수혜 및 수혜중인 자는 참여제한

6.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인은 수행업체(공급업체) 선정 시, 신청서 및 계획서 내 추진 내용과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로 선정해야하며,
- 수행업체(공급업체)는 4대 보험,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소공인(신청인)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수행업체로 선정해야함
- 신청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 지도(완료평가)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 수행 종료 이후 완료보고서와 정산 증빙자료를 10일 이내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로 제출해야하고 특화센터는 자료 미비 시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

7. 문의처

- 재)시흥산업진흥원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김재문 매니저
 - 전화 : 031-434-8737, 이메일 : tkzjwoans414@sida.kr, 팩스 : 031-434-9663